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홍영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9 .

발 의 자 : 홍영표 · 이상현 · 김승남
김경만 · 김승원 · 최강욱
이상직 · 이상민 · 장철민
오기형 · 조승래 · 신정훈
정정순 · 오영환 · 어기구
윤관석 · 문진석 · 김종민
김수홍 · 김남국 · 김교홍
한병도 · 허 영 · 윤미향
민병덕 · 유동수 · 임종성
신영대 · 장경태 · 고용진
권칠승 · 이성만 · 황운하
고영인 · 김두관 · 이장섭
김병욱 · 윤준병 · 정일영
이탄희 · 김철민 · 신동근
강병원 · 김경협 · 전해숙
서영석 의원(46인)

제안이유

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
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
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, 임명권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.

주요내용

- 가.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고,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,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, 제14조제2항 신설).
- 나.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호 신설).
- 다.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,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고,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).
- 라.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하여 표결하고,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

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)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사청문회는 공직윤리청문회(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공직후보자의 도덕성·청렴성 등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공직역량청문회(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·전문성 등에 대하여 청문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각각 분리하여 실시한다.

③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6호는 임명권자(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)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.

6.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보고서

제6조제2항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15일”을 “20일”로, “인사청문회”를 “공직윤리청문

회와 공직역량청문회”로, “3일이내”를 “각각 3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청문경과보고서”를 “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하여 표결하고, 그 결과 및 보고서”로 한다.

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임명권자(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)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인사청문회”를 “공직역량청문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 및 제3항,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호, 제6조제2항, 제9조제1항 및 제2항,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부터 적용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(생략)

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,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

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보고서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30일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 -----
-----20일-----
-----공직윤리청문회와
공직역량청문회-----각각
3일 이내-----.

-----.

